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07호

2021.8.23.(월)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44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	-----------------------------	---

◆ 고 시

제2021-463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금지 연장 고시	5
제2021-467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6
제2021-468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10
제2021-469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17
제2021-470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37
제2021-471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39
제2021-472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41
제2021-473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안내 고시	43
제2021-474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54
제2021-475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63
제2021-476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65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44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8월 23일

별표 1의 총계란, 일반직 계란, 6급 소계란, 행정란, 방호란, 시설란 및 방송통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635	4,713	356	1,160	5,202	204
일반직 계	10,626	4,656	347	396	5,025	202
6급 소계	3,490	1,882	110	105	1,293	100
행정	1,319	876	83	39	250	71
방호	28	14	1	1	12	
시설	570	316	2	2	232	18
방송통신	52	31	2	4	15	

같은 표 7급 소계란, 공업란, 간호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및 행정또는방송통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434	1,383	115	145	1,739	52
공업	418	32	5	12	367	2
간호	136	9		3	124	
시설	527	224	2	5	288	8
방송통신	57	25	3	12	17	
행정또는 방송통신	2	2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부교수·조교수또는전임강사란 및 조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41			541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465			465		
조교	75			7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보건·안전관리 강화, 영동대로복합개발 추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 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해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보건·안전관리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2명)

(방송통신7급 △2명 → 기계7급 +1명, 간호7급 +1명)

나. 건설업부적격 업체 단속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1명)

(방호6급 △1명 → 행정6급 +1명)

다. 영동대로복합개발공사 착공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4명)

(방송통신6급 △2명, 행정또는방송통신7급 △2명

→ 토목6급 +2명, 토목7급 +2명)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3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금지 연장 고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집회금지

가. 금지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집회

※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한다. 금지기간(연장) : 2021년 7월 12일 0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 당초(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37호) 금지기간 : 2021년 7월 12일 0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다. 위반 시 처벌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7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과 관련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1. 방역조치 안내사항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기 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4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구분	관리자 · 운전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③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⑥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퇴근 조치(대장작성)	
	★ 시설 내 공용 장소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추가 적용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재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2. 위반 시 조치사항

○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의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부과사유 :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다.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라. 부과대상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마.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바. 효력발생일 : 2021. 8.23.(월) 0시 부터

사.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8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 2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펍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 2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¹⁾ 준수 의무화) 조치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예방접종 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카페 이용 시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4인 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최대 2명) 포함 최대 4명)

-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1)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

-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① 집단감염(10인 이상) 발생 시 ②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

* 집합금지 기간 : 1주일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제1항)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에 따름
 ※ 사적모임, 행사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8월 23일(월) 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⑤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⑥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⑦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창문, 출입문 상시 개방(권고) -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개방, 환풍기 가동 -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권고)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⑧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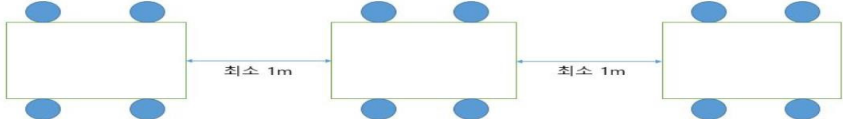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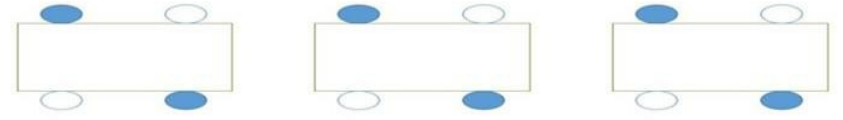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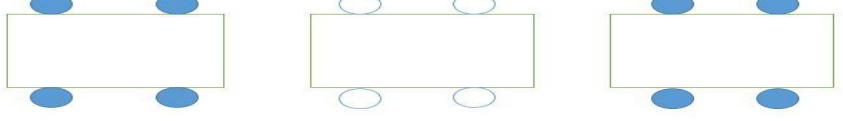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추가 수칙	⑨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① 이용시간 제한 ■ 2인 이상이 커피 · 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2인 이상이 커피 · 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②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③ 공용집계 사용 등 ■ 공용집계 · 접시 ·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공용집계 · 접시 ·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④ 기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가능 ■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공연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공연자 마스크 착용 ·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공연 즉시 마이크5 교체 ·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이용 ■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 공연자 마스크 착용 ·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추가적용수칙: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 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 2m 거리 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좌석 도식도(예)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테이블은 몇인용인지,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9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2그룹 시설 중 노래연습장, 3그룹 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1. 적용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
2. 적용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 적용대상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서울시 소재 2그룹 시설 중 노래연습장
 - 서울시 소재 3그룹 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직업훈련기관,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
 -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 ②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은 운영시간 제한 제외)
(예 : 대형마트, 특정 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대리점)
4. 적용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예방접종 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카페 이용 시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4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최대 2명) 포함 최대 4명)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사적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사적모임 인원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노래(코인)연습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동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시설별 또는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공동 수칙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불가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⑥ 손씻기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⑧ 환기하기	
	■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10분 이상) *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손님이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종료 직후 소독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추가 수칙	① 마이크 사용 등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PC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⑤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⑥ 손씻기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⑥ 환기하기 ■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⑦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⑧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① 이용시간 제한 강력 권고 ■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안내	■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② 공용공간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추가 수칙		

□영화관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좌석 띄우기 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④ 마스크 착용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⑥ 손씻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⑧ 환기하기 ■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추가 수칙	① 상영관 외부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취식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않기
	② 대중음악 등 관람 시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오락실 · 멀티방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⑥ 손씻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 가능 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안내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권고)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멀티방은 퇴실 후 소독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직업훈련기관(일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 통 수 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권고)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추가 수칙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 종사자 일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거 자가진단명부 사용)	
	① 전일제 경우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 · 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②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직업훈련기관(기숙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 · 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 통 수 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 (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권고)
	⑧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추가 수칙	① 입소자, 종사자, 방문자에 대한 권고조치	
	■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 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안내	■ 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②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 공용공간 수칙 적용	

□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점포 대상(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판촉용 시음 · 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건본품 제공 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②-1 출입자 명부작성·관리(3~4단계 대규모모집대상, 준대규모집포전통시장 제외)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의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④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소독하기 또는 손 씻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⑤ 밀집도 완화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 (최소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등 적극활용(권고) -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권고) - 대기 시에도 2m(최소1m) 간격 유지, 방문예약제 적극활용
	⑥ 환기하기	
	■ 실내시설의 경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⑦ 소독하기	
	■ 일 3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쇼핑용카드) 등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추가 수칙	⑧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①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②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 ■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	■ 휴게공간 이용 최소화
	③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및 안내 ■ 문화센터의 경우 강의실 당 시설 허가 · 신고 면적 6㎡당 1명 또는 이용자 간 2m 이상(최소1m) 간격 유지 안내 * 노래, 관악기연주, 댄스, 체육 강좌 등은 자제(권고)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 문화센터의 경우 시설 이용 전 이용 가능 인원 확인 및 이용자 간 2m 이상(최소1m) 간격 유지(권고)

☐ 콜센터

서울시 단계별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3 권고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3 권고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권고	▲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권고	▲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강력 권고	▲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강력 권고

구분	방역관리자 · 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 · 방문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의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방역수칙 준수(의무)

구분	방역관리자 · 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 · 방문자 수칙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의무)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의무) ■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의무)
	⑤ 음식섭취 자제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의무)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의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 (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구분	방역관리자 · 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 · 방문자 수칙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 (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회의,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소독 후 사용하기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의무)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의무)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의무) * 증상 유무 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증상확인 협조 ■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
추가 수칙	① 근무형태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
	②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안내 ■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구분	방역관리자 · 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 · 방문자 수칙
	③ 구내식당, 통근버스, 기숙사, 시설내 공용공간	
	■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해당 방역수칙 준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 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실 내 흡연실 (준수의무)	▲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 21.7.7.)됨에 따라 시설별(기본)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6.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조치
(감염병예방법 제80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지침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지침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 21.7.8.개정·공포)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8월 23일 0시 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대형유통시설 02-2133-5258)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직업훈련기관 02-2133-5463)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콜센터 02-2133-5248)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노래연습장 02-2133-9221,
 PC방·오락실 02-2133-9217, 영화관 02-2133-9220, 멀티방·DVD방 02-2133-921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0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
3. 처분대상 : 서울시 내 백화점·대형마트 내 영업을 위한 종사자
 - 백화점·대형마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의 정의에 따름
 - ※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백화점·대형마트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및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발생
8. 검사장소 : 백화점·대형마트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1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
3. 처분대상 : 서울시 내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 ※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모든 운영자·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및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발생
8.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2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
 3. 처분대상 : 서울시 내 노래연습장(일반, 코인) 운영자 및 종사자
 ※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연습장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및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발생
 8. 검사장소 : 노래연습장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3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안내 고시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고 고시하오니, 서울시내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1. 기 간 : 2021년 8월 23일(월) ~ 2021년 9월 5일(일)
2.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
3. 고시내용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함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운영 가능

(예) 수용인원 50명 공간→5명, 100명 공간→10명, 1000명 공간→99명...동시간대 동일 종교시설 내 공간별 정규종교활동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

- 정규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경우,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 전체 수용인원의 30%(두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 전체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거리두기 준수하여 대면예배 참석 가능 ※ 비대면 :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 포함하여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체 * 모임·행사*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 시설은 비대면 유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상시 마스크 착용 예외사항은 불임 종교 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참조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2단계부터 적용) ■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수칙 준수하여 참여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추가 수칙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① 비말발생(침 튀기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안내	■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②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③ 시설 내 공용 장소	
	■ 휴게실, 탕비실,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④ 무료급식 · 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무료봉사) 운영 시, ※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수칙 적용	
	■ (마스크) 봉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돌봄대상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 · 후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섭취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 · 후 상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봉사자는 봉사대상 접촉 시 상시 손소독	■ (손씻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또는 손소독하기)
	■ (비밀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밀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 (비밀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밀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
	■ (공용물품) 아동 장난감 · 책자 · 공용탁자 등 공용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전 · 후 소독 관리 철저	■ (공용물품) 공용물품 사용 자제

<방역수칙>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 0시부터 9.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5. 법적근거(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49조1항 제2호의2,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등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8월 23일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담당자 : 문화정책과 윤선희 중무팀장(02-2133-2520)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02-2133-2532)

붙임 :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1부.

붙임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 활동 일체를 말함
-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 하여 참여
-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이내, Q4참고)
 -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함
-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체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6.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①예방접종자인(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설교자가 ②설교(강론, 법문, 설교 등)시에 한해 ③가림막(아크릴판) 설치 및 ④설교자와 신도간 3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한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하며(4가지 요건 모두 충족),

- ▶ 예방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설교자를 제외한 사회자(진행자), 인도자, 참석 신도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설교자도 설교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 가림막은 설교자 신장이상 높이로 정면과 양옆 3면이상 설치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8.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0.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

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 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7.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4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중대본 회의 ‘21.8.20.)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1. 적용기간: ' 21. 8. 23.(월) 0시 ~ 9. 5.(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① 목욕장업 (2그룹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동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공동 수칙	③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⑤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내 음식(물 · 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시설 내 음식(물 · 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⑥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이용가능 인원 단계별 적용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⑫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추가 수칙	① 대화자제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안내	■목욕탕 내에서 대화 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② 공용물품 사용 자제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③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② 이 · 미용업(기타시설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⑤ 음식섭취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 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 손님 예약제 운영	
	⑫ 손님 음료 제공 금지	
	① 대화자제 ■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추가 수칙		

③ 숙박업(기타시설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 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 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 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 홀대어는 제외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④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⑤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⑥ 환기하기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⑦ 소독하기	
	■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⑧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수칙	①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②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추가 적용 수칙 :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8월 23일 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5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검사기간 :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
3.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목욕장업 운영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
 -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정의에 따름
 - ※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목욕장업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및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8. 검사장소 : 목욕장업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6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검사기간 :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
3.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학원 및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및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8. 검사장소 : 학원 등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